# 건축공학 교육과정 위원회 내규

#### 제1조(명칭)

• 교육과정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함)는 건축공학 위원회 내에 둔다.

#### 제2조(목적)

• 본 위원회는 건축공학의 교육과정 개설, 학습성과 설정 및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3조(구성)

-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공학 전공 교수 중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구성한다.
-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.
-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.

#### 제4조(위원회의 기능)

-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가 순환자율 개선적으로 수정.보완되도록 프로그램위원회에 상정한다.
- 타 전공수업에 대한 전공학점으로의 인정 여부는 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위원회의 승인하에 인정한다.
- 학습성과의 결과에 대한 취합 및 분석에 관한 사항
-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교과목별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교육목표간의 관계설정에 관한 사항
-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# 제5조(회의)

-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한다.
-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위원장은 안건의 경중에 따라 필요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.

## 부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시행일) 이 내규는 2010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③(시행일) 이 내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건축공학 건축공학위원회 내규

#### 제1조(명칭)

- 교육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함)는 건축공학 위원회 내에 둔다.
- 구 교육평가위원회는 2010년 9월 건축공학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.

## 제2조(목적)

본 위원회는 건축공학의 학습성과의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학습성과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.

#### 제3조(구성)

-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공학 소속 전공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.
-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.

#### 제4조(위원회의 기능)

-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가 순환자율 개선적으로 수정.보완되도록 프로그램위원회에 상정한다.
- 교과과정에 대한 학습성과 평가 및 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
- 학습성과 평가 시스템에 관한 사항
- 졸업 프로젝트 달성도 평가에 관한 사항
- 각종 공인시험 및 수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-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

## 제5조(회의)

-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한다.
-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위원장은 안건의 경중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할 수도 있다.

# 부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10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건축공학 외부자문위원회 내규

#### 제1조(명칭)

• 외부자문위원회(=산학협력위원회) (이하 "위원회"라 함)는 건축공학 위원회 내에 둔다.

#### 제2조(목적)

• 본 위원회는 건축공학 소속 학생들의 산업 현장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3조(구성)

-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공학 전공 교수 및 외부 기업체위원 및 동문으로 구성한다.
-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,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.
-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동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, 연구소, 산업체 인사 및 졸업생을 포함할 수 있다.
- 산업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#### 제4조(위원회의 기능)

-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가 순환자율 개선적으로 수정.보완되도록 프로그램위원회에 상정한다.
- 산업체 학생 현장실습 지도 및 중소기업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
- 최신 기술동향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
- 졸업생 취업지도 및 취업률 향상에 관한 사항
- 졸업생들의 프로그램 요구사항 충족여부 제시
- 산업체 요구 사항 분석 및 반영
-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에 관한 사항
-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- 교수.학생 현장연수, 인턴쉽 및 실습지도에 관한 사항
- 산업체 인사의 대학교육 참여(겸임 및 초빙교수)에 관한 사항
- 산.학간의 정보교환 및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
- 산.학간의 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
- 기타 산.학 협력에 관한 제반사항

## 제5조(회의)

-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한다.
-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위원장은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 부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10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.